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시 연구회 의견 청취 의무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4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시 연구회 의견 청취 의무(안 제12조2제5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2.

다.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Ⅲ. 검토의견

1.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시 연구회 의견 청취 의무(안 제12조의2제5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을 듣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④ (생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 -----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3의2. ----- -----

현행	개정안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u>정부출연 연구기관</u>, 「<u>특정연구기관 육성 법</u>」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u>한국 해양과학기술원법</u>」에 따른 한국 <u>해양과학기술원</u>과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u>내역</u> <후단 신설> <신 설> 4. ~ 9. (생략) ⑥ ~ ⑧ (생략)	----- -----<u>정부출연 연구기관의</u>----- ----- ----- ----- ----- ----- ----- ----- ----- -----<u>내역.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3의3. 「<u>특정연구기관 육성법</u>」에 따 른 특정연구기관, 「<u>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u>」에 따른 한국해양과학 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 정 <u>내역</u> 4. ~ 9.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의2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마련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하며(제5항),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되,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심의 결과 반영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8항).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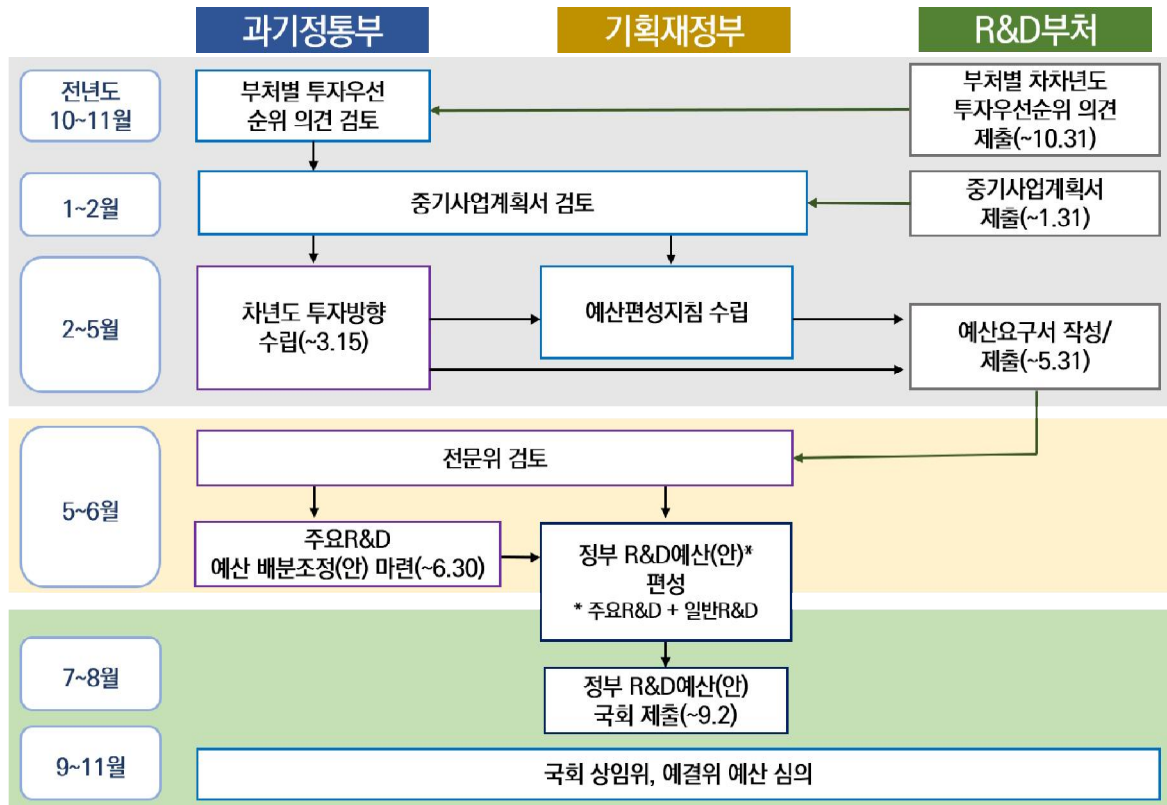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 9. (생략)

⑥ ~ ⑧ (생략)

<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절차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재정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권한 체계의 명확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예산처로 이어지는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절차 중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 청취를 규정할 경우, 예산 배분 과정에 새로운 행위주체가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권 및 총괄 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둘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심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종합적 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대해서도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도록 규정할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예산 조정 기능이 중복되고 심의 단계가 이원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과 상

충될 경우 이를 조정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산하 연구기관의 운영 및 재정 확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짐. 따라서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재원 확대 요구가 편중될 여지가 있으며,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 등 타 연구주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예산 과정에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예산 편성 체계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역할 분담을 감안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만약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를 예산 배분·조정 과정의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적 절차로 운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연구기관을 포함한 각 부처의 예

산 요구를 민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정한 내역에 대해 다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의 반복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고 함. 또한,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의견 청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7